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광상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5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7일

발 의 자 : 유광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신원철, 김동율, 김태수,
유 용, 권미경, 김정태,
김인호, 최판술, 문종철,
장홍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뉴타운 재개발·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철거공사 진행시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과 대형공사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인근의 주민 및 초·중·고교 학생들에게 비산먼지 피해와 통학안전 을 위협하고 있음. 이에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“비산먼지, 통학로 안전 등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, 비산먼지·소음·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함.
(안 제18조의2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“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”를 “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, 비산먼지·소음·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의2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"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u>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의2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, 비산먼지·소음·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